

방

CHAMISAFETY GUIDE · 2026

2026 위험성평가 과태료 대응 가이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바꾼 위험성평가 의무 —

과태료 신설, '실시일자 근로자 공유' 의무, 단계적 시행 일정, 그리고 현장
자가점검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제공 차미안전 (CHAMISAFETY)

지원 365건설안전(주)

2026년 7월 · chami-safety.kr · ceo@chami-safety.kr

© 2026 차미안전(CHAMISAFETY).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눈 요약 — 무엇이 바뀌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오래전부터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로 두었지만,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과태료가 신설**되고, 개정 시행규칙에 **실시일자·결과의 근로자 공유와 3년 보존** 의무가 새로 담겼습니다. 개정 제도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되며,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 신설** — 2026년 2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제175조)으로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과태료 도입.
- **결과 공유 의무 신설** — 실시일자·유해위험요인·개선대책·유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기록·보존** — 실시 결과 관련 자료 3년 보존.
- **시행·부과** — 2026.6.1 시행, 과태료는 2027.1.1(50인 ↑)·2028.1.1(50인 ↓) 단계 적용.

차수별 과태료 기준

위반 유형	1차	2차	3차
위험성평가 미 실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근로자·근로자대표 미참여 또는 결과 미공유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결과 기록·보존 불이행	50만원	150만원	3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제175조) 및 시행령 별표 부과기준 기준. 실제 부과는 관할 판단에 따릅니다.

핵심 신설 — 실시일자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결과 공유 의무**입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다음 내용을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

- 위험성평가의 **실시 일정(실시일자)**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수립한 개선대책과 그 이행 계획·결과
- 근로자가 작업할 때의 유의사항

즉,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실시했는지와 그 결과를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공유'로 보아 차수에 따라 150만~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단계적 시행 일정

개정 제도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현장 안착을 고려해 유예 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	대상
2027.1.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028.1.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50억원 미만) 포함 모든 사업장

규모가 작은 현장이라 해도 2028년부터는 예외 없이 대상이 됩니다. 유예 기간은 준비할 시간이지, 실시를 미뤄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현장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5가지

1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가?

최초(작업 전)·정기(매년 1회 이상)·수시(유해위험요인 발생·사고 시) 평가를 모두 실시. **미실시 500 / 700 / 1,000만원**

2 근로자·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켰는가?

평가 과정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 참여 필수. **미참여 150 / 300 / 500만원**

3 실시일자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했는가?

실시일자·유해위험요인·개선대책·유의사항을 게시·서면·전자적 방법으로 전달. **미공유 150 / 300 / 500만원**

4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는가?

실시 결과·관련 자료 3년 보존. **미보존 50 / 150 / 300만원**

5 정기·수시 평가 주기를 지키고 있는가?

정기는 매년, 수시는 상황 변화 시마다 반복. 공중·계절·환경 변화에 맞춰 갱신.

차미안전으로 5가지를 한 번에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실시·공유·참여·기록**을 차미안전(차미마스터)이 자동화합니다.

- **실시** — 공중·계약 정보로 위험성평가표 초안을 자동 구성.
- **공유** — 실시일자·결과를 **카카오톡 링크 한 줄**로 근로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
- **참여·확인** — 근로자가 링크를 열어 **간단한 퀴즈**로 확인하면 간편인증 완료.
- **기록·보존** —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 자동 기록되어 3년 보존까지 연결.

차미안전 (CHAMISAFETY) · 대표 이규식

사업자등록번호 589-32-02045 · 경